

AMO Asia 주식회사 서비스 조건

본 서비스 구매서 조건은 AMO가 구매자인 아래의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1. "AMO"는 한국의 지사를 포함해 AMO Asia 주식회사를 뜻한다. "공급자"는 여기의 조건아래 AMO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이나 개인을 말한다. 작업서("SOW")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않고 구매서와 관련되어 사용된 모든 AMO 구매양식에 포함된 조건은 여기에 언급됨으로써 이에 통합되어 있으나 이러한 AMO 구매 양식과 본 구매서의 조건사이에 충돌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구매서가 우선한다. 그러나 구매양식이 특정적으로 충돌을 인정하고 그 구매양식에 포함된 조건이 우선한다고 명시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급자는 여기와 SOW 명시되어있는대로 서비스와 공급물을 공급한다(이하 "서비스"라 함). AMO는 여기에 필요로하는 서비스의 공급을 위해 공급자의 능력, 기술, 전문지식, 그리고 경험을 고려하고 이에 의존하여 본 구매서를 발행한다. 모든 서비스(공급물 포함)는 사전 지불금에 상관없이 AMO의 승낙에 따른다. 승낙할 수 없는 공급물은 승낙될 때까지 다시 제공되어야 한다.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공급자는 건강보험법, 반뇌물법, 의료법 제 27 조 제③항, 그리고 유사한 지방자치단체의 법규 등과 같은 모든 전국 및 지역 보건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모든 규칙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않고 모든 해당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규와 지침, 그리고 AMO내에서 지체시 동 회사의 방침을 준수해야 한다.
3. 공급자의 서비스 공급의 대가로, AMO는 여기 또는 SOW에 명시된 금액을 공급자에게 지불한다. AMO는 공급자에게 여행경비(항공여행 시에는 AMO의 여행방침에 일치하는 일반석 항공여행), 음식, 숙박을 포함하여 공급자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발생한 사전 허가되고 합리적인 자체조달경비가 적절한 영수증으로 입증되면 환급한다. 구매서의 초기해지시에는, AMO는 공급자에게 공급자가 해지일까지 자비로 지불한 모든 사전 허가되고 합리적이며, 이전될 수 없고 취소될 수 없는 경비를 비례 배분 방식으로 지불한다. SOW에 달리 특정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전에는, AMO는 각 지불금액을 AMO가 이의하지 않는 청구서를 받은 때로부터 삼십(30)일 내에 지불한다.
4. SOW에 달리 특정적으로 명시되어있기 전에는, 본 구매서는 발행일부터 시작하여 일(1)년 기간동안 유효하다. AMO는 공급자에게 삼십(30)일 내에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아무런 이유없이 본 구매서를 즉시 해지할 수 있다. 각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 의한 구매서의 현저한 조건 위반시 이 위반사항을 위반통지를 받은 후 삼십(30)일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한국식품의약청 또는 기타 정부 규제기관이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본 구매서를 즉시 해지할 수 있다. 본 구매서의 해지나 만료는 그 전 또는 이와 관련되어 이미 귀속한 어떤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5. 본 구매서의 기간동안과 이후의 오(5)년 기간동안, 공급자는 구매서나 AMO가 서면으로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AMO의 비밀정보를 공개 또는 사용할 수 없다. 비밀정보는 AMO와 서비스(공급물 포함)에 관하여 AMO에 의해 또는 이를 대신해 공급자에게 제공되거나 공급자의 서비스 공급(공급물 포함)의 결과로 인해 개발된 모든 정보, 데이터, 자료를 포함하나 여기에서 다음 사항은 제외된다: (a) 공급자의 서면기록에 의해 증명되어지는, 공급자가 여기의 구매서에 따라 받기 전에 비기밀적으로 공급자에게 알려졌던 사항; (b) 본 구매서의 발행 이후, 공개자격이 있는 제 3 자에 의해 비기밀적으로 공급자에게 공개된 사항, 또는 (c) 공급자의 책임 없이 공공이 알거나 알게 된 사항. 서비스의 완료나 본 구매서의 해지, 만료의 어떤 것이든 먼저 도래한 때, 공급자는 AMO가 공급자에게 제공하였거나 또는 AMO가 요청한 서비스(공급물 포함)의 결과로 인해 공급자에 의해 개발된 모든 비밀 정보를 AMO가 요청하는 대로 AMO에 반환하여야 한다. 본 구매서의 어떠한 내용도 법, 법원 명령 또는 기타 정부 명령에 의해 요구되어 공급자가 비밀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나 이 경우 공급자는 적시에 AMO에게 알리고 가능한 한 비밀정보의 공개를 제한하고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 노력을 기울인다. 추가로, 공급자는 AMO가 적절한 법적 방식으로 이러한 공개를 제한하는 것을 시도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6. 공급자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실행하고, 만들었으며 개발한 모든 보고서, 통신문, 자료, 정보, 공급물, 또는 발견사항은 AMO에게 즉시 알려져야 하며 AMO의 고유 자산이 되고 공급자는 로열티나 기타의 보상 없이 AMO에게 그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이익을 양도한다. 상기사항이 저작권에 해당되어 질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이는 저작권법 제 9 조 아래서 업무상저작물로 간주되고 AMO의 고유자산이 되어 그렇게 유지될 것이며, 또는 그렇지 않을 경우, 공급자는 상기 자료를 AMO에게 양도하는 데에 동의하고 이를 이 구매서 조건에 의해 양도한다. 상기사항에도 불구하고, AMO는 본 구매서에 따라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이전에 공급자나 그에게 사용을 허가한 자가 소유한 자료, 정보, 노하우, 도구, 모델, 방식, 기술 및/또는 기타 지적재산을 소유하지 않는다(상기의 모든 사항은 “현존 지적재산”). 공급자는 AMO가 공급자의 서비스(공급물 포함)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상기의 현존 지적재산을 사용, 수정, 향상하기 위해 AMO에게 비독점, 취소불가능한 로열티 없는 전세계적 범위의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7. 공급자는 서비스에서 결과된 공급물, 기타 자료들을 AMO의 사전 허가 없이 발표, 출판, 또는 출판을 위해 제출하지 않는다.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허가 없이 상대방의 이름을 어떠한 홍보물, 광고, 발표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본 구매서의 존재나 조건사항 또는 SOW 또는 본 구매서에 의해 이루어진 어떠한 관계도 공개하지 않는다.
8. 각 당사자는 (a) 본 구매서나 여기의 어떤 지불금액이 공급자가 AMO의 제품들을 규정, 권고, 사용, 또는 구매하도록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으로 동의, 이해, 또는 다른 방식으로 약정하는 것에 대해 교환적인 것이 아니고 (b) 서비스의 총 지불금액은 서비스와 공급물의 공평한 시장가치를 나타내고, 공급자와 AMO 사이의 소개나 거래의 양 또는 가치를 고려하여 결정지어지지 않았음을 진술하며 이를 보증한다. 공급자는 본 구매서의 조건은 공급자가 갖고있는 모든 계약적 또는 법적 의무 또는 공급자가 관련되어있는 모든 법인들의 방침과 불일치하지 않으며 여기에 제공되는 서비스와 공급물은 공급자의 직업표준을 충족하고 전문적으로, 시간에 맞게 효율적, 직업정신에 입각하여 실시됨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공급자는 본 구매서 아래 서비스와 공급물을 제공하는 모든 임직원, 대리인, 컨설턴트, 수급인은 상기에 명시된 비밀 정보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고 본 구매서의 조건을 준수할 것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공급자는 여기에 명시된 가격이 공급자가 어떤 고객들에게 제시한 유사 서비스와 공급물 가격처럼 낮은 가격임을 보증하고 여기에 명시된 가격은 본 구매서의 기한동안 변경되지 않을 것임에 동의한다. 공급자는 여기에 제공되는 서비스(공급물 포함)는 한국이나 외국 특허, 상표, 저작권, 또는 기타 지적재산이나 기타 모든 제 3 자의 고유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증한다. 공급자는 다음의 청구나 법적절차에서 비롯되는 모든 의무, 판결, 요구, 소송, 손실, 피해, 경비 및 기타 비용(합리적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고)에 대하여 AMO와 이의 계열회사 및 그 각각의 직원, 이사, 임원, 대리인들을 면책, 보호함에 동의한다: (a) AMO가 공급자에게 통보하고 공급자가 선택하여 상기 청구나 법적절차에 대응, 방어, 합의하고 아니면 이를 종료하도록 허가내리는 경우에 한해 상기 침해주장이 제기되었을 때, 또는 (b) 공급자의 본 구매서에 대한 태만, 무사려, 의도적 부정행위 또는 위반으로 야기되었을 경우. 침해 청구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공급자는 선택적으로 해당 공급물을 수정하여 비침해가 되도록 하거나 공급물을 비침해 동등물로 교체하거나, AMO가 공급자의 비용으로 공급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도록 하거나 또는 침해 공급물을 제거하고 AMO에게 이러한 공급물에 지불한 모든 비용을 환불한다.
9. 본 구매서 아래서의 공급자의 지위는 독립된 수급인이다. 공급자는 어떠한 목적에서든지 AMO의 직원, 대리인, 동업자, 합작기업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되며 AMO를 구속하거나 이를 대신해 행동할 어떠한 권한도 없다.
10. 공급자는 고유의 경비와 비용으로 본 구매서 기한동안 다음의 보험에 완전히 가입하고 그 효력을 유지한다: (a) 산업재해보상보험, (b) 사고당 무제한 개인상해배상과 일억원 (100,000,000KRW)까지의 재산피해배상을 보장하는 모든 소유, 비소유, 임차차량을 커버하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및 (c) 사고당 최소 일억원(200,000,000KRW)의 전문인 의무보험을 포함하는 일반 책임보험. AMO와 이의 자회사는 상기 보험에 추가의 보험수익자로 지명된다.

11. 본 구매서는 국제사법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결정되고 해석된다. 구매서는 그 내용에 대한 당사자들의 완전한 이해를 포함하고 있으며 관련 모든 사전의 제안 및 계약서를 대체한다. 단, 구매서의 체결 당시 효력이 있는 별개의 합의서가 있는 경우에는 본 구매서는 해당 합의서에 본 구매서의 조건이 다루어지지 않은 범위에서만 해당 계약서의 조건만을 대체한다. 본 구매서는 당사자들이 서명한 서면 합의문에 의해서만 수정될 수 있다. 공급자는 AMO의 사전 서면동의(AMO의 전적인 재량으로 부여 또는 보류할 수 있음) 없이는 제 3 자에게 본 구매서나 여기의 이익을 양도하거나 의무를 위임, 하도급줄 수 없다.
12. 기타 어떤 반대되는 진술, 통지, 또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본 구매서나 관련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어떤 서면화된 승인은 공급자가 여기의 표지와 이 구매서에 명시된 조건들에 대한 승낙을 구성한다. 여기에 포함된 조건 일부 또는 모두가 승낙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자는 본 구매서를 받은 즉시, AMO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것이며 공급자와 AMO 사이에 별개의 계약서가 체결될 때까지 서비스 실행을 유예한다.
13. 공급자는 여기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나 이의 직원, 대리인들이 금지된 법인이나 개인이 된 적이 없고 현재에도 그렇지 않으며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는 법절차의 대상이 아님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공급자는 또한 본 계약서의 기한동안, 여기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나 이의 직원 대리인들이 금지된 법인이나 개인이 될 수 있는 법절차의 대상이 되거나 현재 그 대상일 경우, 공급자는 즉시 AMO에 통지할 것임을 서약, 진술, 보증하며, AMO는 본 계약서를 즉시 해지할 권리를 갖는다. 이 조항은 본 구매서의 해지나 만료이후에도 효력을 갖는다. 이 조항에 있어서, “금지된 법인이나 개인”의 용어는 약사법 및 식품위생법을 포함하여 해당 법규에 따라 한국식품의약청이나 기타 정부, 지방 행정기관에 의해 금지된 법인 또는 개인을 뜻한다.